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 *수급자에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서비스제공자 에게 통보
-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만료일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기관의 의무 운영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하며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